

효심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내부 관리계획

재정 : 2023.10.20.

제 1장 총 칙

제 1조(목적)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 노인학대 방지,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.

제 2조(정의)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CCTV”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.
2.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3.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4. “정보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· 저장 · 편집 · 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 3조(적용범위)

효심노인요양원에서 설치·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기본방침)

효심노인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, 노인학대 방지, 화재예방,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장 CCTV의 운영 및 관리

제5조 (책임자 지정)

CCTV 설치 · 운영 관리책임자(이하 ‘책임자’라 한다)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1. CCTV 설치 · 운영 관리책임자
 - 가. 관리책임자 : 시설장
 - 나. 운영책임자 : 사무국장
 - 다. 운영(모니터링)담당자 : 사무국장

2. 제1항에 따른 관리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,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3. 관리 책임자는 제1항의 운영 책임자와 운영(모니터링)담당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

제6조 (CCTV 설치)

① 효심노인요양원 CCTV는 총 20대 설치하며 설치 장소는 각호와 같다.

구분	효심노인요양원 CCTV	
	수량	일반형 CCTV
1층	1대	복도(1대)
2층	9대	2층 거실(1대), 각 침실(8대)
3층	7대	3층 거실(1대), 각 침실(6대)
4층	2대	프로그램실(1대), 작업치료실(1대)
그 외	1대	승강기 내부(1대)
총 설치 대수	총 20대	

설치구분

공동 거실	복도	침실	현관	작업 치료실	프로그램실	식당	엘리베이터	기타	합계
2	1	14		1	1		1		20

1. 침실 14대, (침실 각 1대), 작업치료실 1대, 프로그램실 1대, 엘리베이터 1대 (총 17대)
2. 공용공간 3대 (층별 공동거실 2대, 1층 복도 1대)
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규격 210mm*297mm 안내판을 주 출입구 1곳과 1층 엘리베이터, 게시판, 외부 벽에 설치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1층 사무실에 설치하며,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.
 1. CCTV 운영 모니터
 2. 디지털 녹화기(NVR)

제7조(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)

효심노인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.

1. CCTV 성능 : 400만 화소
2. CCTV 촬영 : 24시간 상시 촬영
3. CCTV 정보 보관기간 : 60일

4. CCTV 저장 : 200만 이상 30프레임
5.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: 1층 사무실에 있는 NVR
6.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: 1층 사무실
7.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: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

제 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

제8조(영상정보 열람가능 사유)

-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
 1.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·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 2.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 3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
 4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5.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 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
제9조(영상정보열람요청시 서류제출 절차 및 방법)

- ①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 1.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
 2. 천재지변,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,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
 3. 열람 목적에 위배 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-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,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10조 (운영자의 금지행위)

-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 - 1.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
 - 2.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(Zoom-in)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
 - 3. 녹음 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

제11조(화상정보 처리 제한)

-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 다만,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
 -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하는 경우
 -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- 3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- 4.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- 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- 6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12조(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)

-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지 제 3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-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,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통지가 완료된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(화상정보) 이용·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 - 1.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 - 2.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
 - 3.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
 - 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
 - 5.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
-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4호 서식의 열람 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-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)

-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른 정정(삭제) 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른 서면(정보통신망 포함)통지해야 한다.
 -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- 2.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- 3.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- 4. 그 밖에 정정·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제14조(화상정보 보호 조치)

-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 및 책임자가 지정한 자로 제한한다.
-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(화상정보 보관 관리)

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,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장비관리)

-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 9호 서식의 CCTV 운영·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, 점검 결과를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칙

제17조(사무의 위탁)

-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·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·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,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8조(비밀유지의무)
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9조(준용규정)

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(보건복지부)」, 「통신비밀보호법」, 「행정절차법」 등을 준용한다.